

[직무발명보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 승인 또는 중단사유, 권리남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18713, 218720 판결 참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구 발명진흥법의 규정의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었어도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항은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피고가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개정 발명진흥법의 규정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한 내용일 뿐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525915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